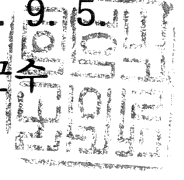

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변경 계획(안)

의안 번호	234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15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금액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사 업 명 :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
- 출연대상 : 대구신용보증재단
- 출연금 변경내용 : 3억 원 증액(당초 10억 원 → 변경 13억 원)
※ 보증규모 : 30억 원 증액(출연금의 10배)

3. 향후 추진계획

- 제2회 추가경정예산(안) 상정(제307회 임시회) : 2023. 9. 8.
- 신용보증재단, 금융기관과 변경운영 협의 및 출연금 교부 : 2023. 9.
- 사업시행 : 2023. 9. 21. ~ 자금 소진 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(2)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(기본재산)
- (3)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특례보증 지원)

나. 그 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운영 현황

- 출 연 금 : 10억 원(보증한도 100억 원)
- 접수기간 : 2023. 5. 24. ~ 8. 3.(접수마감)
- 보증건수 : 395건 9,305백만 원
 - 일 반 특례보증 : 387건 / 9,265백만 원
 - 저신용 특례보증 : 8건 / 40백만 원
- 대출실행 세부내역

구 분	내 역	
등급별	일 반	1등급(40.6%), 2등급(18.6%), 3등급(11.9%), 4등급(18.3%) 5등급(6.7%), 6등급(2.3%), 7등급(1.6%)
	저신용	6등급(25%), 7등급(62.5%), 8등급(12.5%)
지역별	일 반	다사읍(20.9%), 화원읍(19.6%), 논공읍(14.5%), 옥포읍(11.6%) 현풍읍(11.1%), 그 외 10% 미만
	저신용	다사읍(50%), 현풍읍(25%), 논공읍(12.5%), 하빈면(12.5%)
업종별	일 반	숙박 및 음식점업(27.6%), 도매·소매업(23.5%), 제조업(10.3%) 그 외 10% 미만
	저신용	숙박 및 음식점업(50%), 협회 및 단체·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25%) 도매·소매업(12.5%), 교육서비스업(12.5%)

출연 심의요구서

출 연 대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관 명 : 대구신용보증재단 ○ 대 표 : 황 병 옥 ○ 일반현황 :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, 4층 															
출 연 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가출연 예정금액 : 300백만 원(1,000백만 원→1,300백만 원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백만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업기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예산액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2023 2차추경 요구액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2023 1차추경 요구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3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재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월~ 자금소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3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출연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원으로 조성 	구 분	사업기간	예산액	2023 2차추경 요구액	2023 1차추경 요구액	합 계	-	1,300	300	1,000	기본재산	9월~ 자금소진시	1,300	300	1,000
구 분	사업기간	예산액	2023 2차추경 요구액	2023 1차추경 요구액												
합 계	-	1,300	300	1,000												
기본재산	9월~ 자금소진시	1,300	300	1,000												
출 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금액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돕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함 															
근 거 법 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○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 ○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 															
사 업 부 서 의 견 (총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00백만원의 추가출연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															

출연기관 현황

기관명	대구신용보증재단		전화번호 : 053-560-6300							
			홈페이지 : www.ttg.co.kr							
소재지	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, 4층									
설립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률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○ 시행령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○ 조례 :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									
설립일자	○ 설립일자 : 1996. 11. 7.									
조직인력	○ 2본부 3부 7영업점 2실 1센터 / 99명							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용보증 ○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○ 소기업·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○ 구상권의 행사 ○ 기본재산 관리 ○ 국가,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대구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									
보증현황 (건, 백만원)	총보증공급(누적, '23.8.31.)		보증잔액('23.8.31.)		2023년 보증공급('23.8.31.)				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			
	570,643	14,446,211	126,517	2,294,807	46,689	1,179,235				
기본재산 (백만원)	총 기본재산 ('23.8.31)	설립당시 기본재산				증감 기본재산				자치단체출연 기본재산 (기초포함)
		소계	시	정부	기타	소계	시	구군청	정부	
	435,685	51,427	25,000	10,500	15,927	384,257	139,543	5,280	74,002	165,433
재무현황 (백만원)	자산('22.12.31.)			부채('22.12.31.)			자본('22.12.31.)			
	계	유동자산	비유동자산	계	유동부채	비유동부채				
	325,810	223,063	102,747	73,902	35,499	38,403	251,908			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□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[전문개정 2011. 4. 14.]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(특례보증 지원)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.

③ 군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.

⑤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